

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2223
------	------

2024. 12. 20.  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10월 16일, 김길영 의원(찬성자 28명)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18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】

- 제7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4.12.19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 가결)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김길영 의원)

### 1. 제안이유

- 국·내외 대회에 참가하는 서울시청 소속 선수와 지도자, 임원 유니폼, 이동차량 등에 서울브랜드 로고를 넣어 홍보 효과를 높이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
가. 서울특별시 휘장 및 브랜드를 경기인 및 임원 피복, 이동 차량 등에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.


## 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강옥심)


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인 및 임원이 경기·훈련 등에 참가를 위해 활용하는 피복, 차량 등에 서울특별시 휘장 및 브랜드를 부치게 하여 서울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음.

### 나. 개정안의 필요성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3년 8월 16일 발표된 신규 서울 브랜드인  을 경기·훈련에 참가하는 서울시청 소속 선수단 및 임원의 피복과 차량에 부착할 수 있게 하여 서울의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음.

- 서울 브랜드인  은 지난해 8월 출범 이후 올해까지 382건 표출 및 홍보된 바 있으며, 「서울 신규 브랜드 활용계획」(정무부시장 방침 제4호, 서울브랜드담당관-6750호, 2023.8.22.)에 따라 서울시 전 실·국과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에 활용되고 있음.

또한 전국체전 서울시선수단 단복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서울시 선수단복 및 임원복에  을 부착하여 지급한 사례가 있음.

- 현재 전 세계 도시들은 도시 브랜드를 도시 마케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바,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대회 등에 출전할 때 서울시 브랜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의 브랜드가 간접적으로 홍보될 수 있게 한다는 점에 있어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**< 관련 신.구조문 대비표 >**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관리규정 등) ①·② (생략) <u>&lt;신 설&gt;</u>	제10조(관리규정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수탁자는 「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」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휘장 및 브랜드를 경기인 및 임원 피복, 이동 차량 등에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다. 개정안의 주요 내용**

**(1) 직장운동경기부 피복 등에 서울시 브랜드 활용(안 제10조제3항)**

-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(이하 “경기부”라 한다)는 2024년 10월 기준 23개 종목 25개팀 188명(지도자 33명, 선수 155명)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경기부의 운영은 서울시체육회에서 위탁하고 있음.
-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수탁자인 서울특별시체육회의 「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리·운영 규정」을 보면 제30조는 경기지도자 및 선수들이 훈련 및 대회 참가를 위한 이동 시에 차량을 확보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,

동 규정의 제37조는 경기부가 지도자 및 선수의 훈련 및 대회참가를 위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, 별도의

기준에 따라 피복을 지급하고 있음.

- 동 개정조례안은 수탁자가 관리하거나 배부하는 물품에 서울특별시 휘장 및 브랜드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바, 경기부를 관리·운영하는 수탁자는 규정을 통하여 물품 등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이를 정함에 있어 법제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아울러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부 경기복의 로고 사용에 있어 서울시 관련해 어떤 로고를 붙여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됨.
- 다만 대한체육회가 주관, 주최, 운영, 파견, 관리하는 모든 국내·외 경기대회는 대한체육회의 마케팅규정이 우선되기에 대한체육회의 마케팅 자산 및 상업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실행해야하므로, 경기부가 서울시 로고 사용에 있어 대한체육회와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 사항들을 점검해야 할 것임.
- 또한 펜싱, 태권도, 산악, 쇼트트랙 등 일부종목은 국제경기를 주관하는 국제연맹에서 로고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경기인의 경기복에 서울시 로고 부착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검토를 통하여 서울시 로고를 붙일 수 있는 종목·대회 등을 미리 명확히 파악하여,

경기부의 경기인이 서울시 로고를 부착하고 출전하였을 때 로고로 인하여 경기인 또는 지도자가 종목별 국제연맹으로부터 받는 피해가 없도록 사전 검토에 충실해야 할 것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적위원 10명, 참석위원 10명, 참석위원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길영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22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10월 16일  
발 의 자: 김길영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강석주, 김경훈, 김규남,  
김동욱, 김영철, 김용호,  
김원중, 김재진, 김종길,  
김태수, 남궁역, 남창진,  
문성호, 민병주, 박상혁,  
박 석, 박춘선, 유만희,  
유정인, 윤기섭, 이봉준,  
이상욱, 이성배, 이원형,  
이종환, 이효원, 최진혁,  
홍국표 의원(28명)

## 1. 제안이유

- 국내외 대회에 참가하는 서울시청 소속 선수와 지도자, 임원 유니폼, 이동차량 등에 서울브랜드 로고를 넣어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 휘장 및 브랜드를 경기인 및 임원 피복, 이동 차량 등에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.

## 3. 참고사항
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#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수탁자는 「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」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휘장 및 브랜드를 경기인 및 임원 피복, 이동 차량 등에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관리규정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0조(관리규정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수탁자는 「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」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휘장 및 브랜드를 경기인 및 임원 피복, 이동 차량 등에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



#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운동경기부 유니폼 및 이동 차량 등에 서울특별시 휘장 및 브랜드를 부착<sup>1)</sup>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참고로 서울시는 2024년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<sup>2)</sup>을 위해 19,168,489천원의 예산을 편성함

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담당관  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오    희    선  
추계세제팀장      김    중    헌  
추계분석관      손    제    승  
☎ 02-2180-7954  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**

1) 또한 수탁자(서울특별시체육회) 보도자료 등을 확인결과 경기인 및 임원 유니폼 등에 서울특별시 브랜드(SEOUL MY SOUL)를 부착하고 있어 홍보물 부착을 위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

2) [기시행사업] 2024년도 서울시 <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> : 19,168,489천원

과목구분	2024년 예산내역	
민간위탁금	○ 수탁기관 운영비	= 452,640천원
	○ 인건비	= 13,423,039천원
	○ 기본경비	= 3,165,061천원
	○ 일반운영비	= 2,127,749천원

자료 : 2024년 서울시 관광체육국 사업설명서